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2. 4. 20
산업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2. 4. 10
- 나. 提出者 : 서 산 시 장
- 다. 回附日字 : 2002. 4. 11
- 라. 上程日字 : 2002. 4. 20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上下水道事業所長 文英燮)

가. 制定理由

- 수도법제19조의2(2001. 3. 28)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의 활성화와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질향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수돗물 소비자,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서산시의회의원, 업무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과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과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위원장이 정함(안 제11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법에서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질전문가를 포함 9인이내 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을 활성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켰으며,
- 본 조례안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깨끗한 음용수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57 호
의결 년 월 일	2002. 4. (제 회)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4. 10.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57
----------	-----

제출년월일 : 2002. 4. 1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 정 이 유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질감사 및 공표기능의 활성화로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함

2. 주 요 골 자

-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 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민, 시민단체 임원, 수질전문가, 시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무의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함(안 제4조, 제5조).
- 라. 위원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안 제7조).
- 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시험담당주사로 함(안 제9조).
- 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의견 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은 “서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안 제10조).
- 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함(안 제11조).

3. 참 고 사 항

- 가. 관련근거법령 : 수도법 제19조의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위원수당(1,000,000원) 추경예산 계상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 승인, 인가, 보고 등 관련서류 : 해당없음
- 마. 준칙안(표준안)등 : 없음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 소비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산시의회의원
5. 당인직 위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중 관계 공무원의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②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시험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위원회설비비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